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68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7.

발 의 자:위성곤·소병철·윤건영

윤재갑・이개호・이수진(비)

이용빈 · 이용선 · 이원택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 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,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, 실험동물의 건강과복지 등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동물권리보장원,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,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·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4조).

- 나.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 제4조의 2 신설).
- 다.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반려동물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목줄 을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함(안 제8조).
- 라.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,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).
- 마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- 바. 유실·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, 실험동

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,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그 공급에 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, 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).

사.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,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및 평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41조의3 신설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으며,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 · 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

- 의 적정한 보호·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조의2(동물복지종합계획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 지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
 - 2. 동물의 보호 ·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
 - 4.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
 - 5. 동물의 보호·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- 6.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
 - 7.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동물의 보호 ·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하고,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동물에 대하여"를 "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학대행위를"을 "행위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"질병의"를 "해당 동물의 질병의"로 하며, 같 은 항 제2호 본문 중 "신체를"을 "몸을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질 병의"를 "해당 동물의 질병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 중 "제3항까지"를 "제4항 까지(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)"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"고양시키기" 를 "고양하기"로 한다.

- 4.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4.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 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나.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·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- 다.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라. 동물의 사육·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
- 2.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
- 3.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
- 4.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·구매하는 행위
-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동물을 유기(遺棄)하는 행위
- 2.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, 위생·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·관리 또는 보호의무 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
- 3.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4. 반려동물에게 2m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

묶어 사육하는 행위

제9조제1항제1호 중 "급격한"을 "동물을 포개어 운송하지 아니하도록하며, 급격한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모든 동물은"을 "누구든지"로, "도살되어서는"을 "동물을 도살하여서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"을 "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)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물복지 도축규정 위반행위의 점검과지도를 위해 사용・제공되어야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)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, 주소,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(이하 "보호시설 운영자"라 한다)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 를 하여야 한다.
-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동물법의검사 의뢰)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·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 할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 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23조의 제목 "동물실험의 원칙"을 "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"으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(이하 "실험동물"이라 한다)의"를 "실험동물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동물실험의 원칙에"를 "실험동물의 사육, 수의학적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의관리·운영 등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"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사유"를 "사유(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에 한정한다)"로 한다.

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'위원회(IACUC)표준운영가이드라인'으로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2항제2호 중 "제4조제4항에"를 "제4조제3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장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8조의2(실험동물의 공급)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.
- 제28조의3(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)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시설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·기록하도록 하고, 실험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고 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누구든지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법과 이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실험시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, 동물실험기관의 장은 신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즉각 조사·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1조의3(동물권리보장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

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.

- ② 동물권리보장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동물권리보장원이 정관을 제정·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동물권리보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, 지부,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7.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
- 8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의 방법
- 10. 규약・규정의 제정・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동물권리보장원의 이사회는 동물보호와 복지, 동물윤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동물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
- 2.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원
- 3. 반려동물 영업장, 동물실험시설, 축산농장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 사 및 평가
- 4.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동물의 구조 · 보호에 대한 지원
- 5.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
- 6. 동물 관련 해외 정책조사 및 사례분석
- 7.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무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⑦ 동물권리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"를 "제33조에"로, "하거나"를 "하지 아니하거나"로, "받거나"를 "받지 아니하거나"로, "한"을 "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38조에"를 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"로, "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"을 "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

거나 신고를"로, "영업자"를 "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
- 2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
- 5.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

5의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을 죽인 자

4의3.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 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4조(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・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-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가. 도로・공원 등의 공공장 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(이하 "유실·유기동물"이라 한다)
 - 나.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

 를 받은 동물(이하 "피학

 대 동물"이라 한다)
- 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·예산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·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 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
- 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 ·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

 실·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

 실험윤리 등의 교육·홍보에

 관한 사항
- 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

 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

 사항
- 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 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등 동 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 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 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 시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 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 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·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, 복지업무

-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.
-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· 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 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

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의2(동물복지종합계획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
- 2. 동물의 보호·복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
- 3.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

- 4.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

 사항
- 5. 동물의 보호·복지 관련 대

 국민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- 6.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
- 7.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동물의 보호·복지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 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 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수 렴하고,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

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<u>동물에 대하여</u>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농 리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<u>학대행위를</u>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 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<u>질병의</u> 예 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.
- 2.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. 다만,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

<u></u>
세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
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
<u>이르게 하는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
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
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
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
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
는 행위
<u> </u>
<u>행위를</u>

1
해당 동
· <u>"이 이</u> 물의 질병의
<u> </u>
· 2
z. 몸을
<u> </u>
<u>해당 동물의 질병의</u>

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3. (생략)

- 3의2.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| <삭 제>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・관 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
- 4.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 | 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 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3. (현행과 같음)

- 4.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
- 가. 사람의 생명 · 신체에 대 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 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 는 행위
 - 나.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 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·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다.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

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 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, 판 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 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·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- 1. 유실・유기동물
- 2.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수 없는 동물

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 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라. 동물의 사육·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 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-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 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.
 - 1.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
 - 2.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
 - 3.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
 - 4.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

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(遺棄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</u>에 해당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 는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 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 재하는 행위. 다만, 동물보호 의식을 <u>고양시키기</u> 위한 목적

<u>동물임을 알면서 알선·구매</u> 하는 행위

-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동물을 유기(遺棄)하는 행위
 - 2.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
 공간 제공, 위생·건강 관리
 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
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·관
 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
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
 하는 행위
 - 3.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

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

 행위
 - 4. 반려동물에게 2m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 적으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

5	 	 	 	 	 	-

1	<u>제4항까지(제4항</u>
제1호는	제외한다)
	·
	고양하기

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~ 4. (생략)

- 제9조(동물의 운송) ① 동물을 운 조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
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, <u>급격</u>
 한 출발·제동 등으로 충격과
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
 것
 - 2. ~ 5. (생략)
 - ②・③ (생략)
- 제10조(동물의 도살방법) ① 모든 기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 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,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,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 법·전살법(電殺法)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

1 <u>동물</u>
을 포개어 운송하지 아니하도 록 하며, 급격한
2. ~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동물의 도살방법) ① <u>누구</u>
<u>든지</u> <u>동물을 도살하여서는</u> -
②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

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 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 야 한다.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 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말한다) 등을 통하여 도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 보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물 복지 도축규정 위반행위의 점 검과 지도를 위해 사용・제공 되어야 한다.

제15조의2(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)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 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 다)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

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, 주소,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(이하 "보호시설운영자"라 한다)는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신고 등) ①・② (생 략)

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 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 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-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 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 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 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・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 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 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신고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 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 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) ①·② (생 략)

-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(이하 "실험동물"이라 한다)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 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 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~ ⑥ (생 략)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동물실험의</u>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4조(동물실험의 금지 등) 누구 제24조(동물실험의 금지 등) ----

제16조의2(동물법의검사 의뢰) 제 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 ·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 가 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 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 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 ·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 가 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 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 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· 통보를 받은 관할 시 · 도 가수 가장장은 관할 시 · 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수・구청장은 관할 시·도 가 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 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 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 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 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 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실험동물의
<u>등</u>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실험동물의</u>
③ 실험동물의
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⑦
실험동물의
사육, 수의학적 관리 및 동물실
헌시설의 관리·운영 등 동물실
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
<u>방법에</u>

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 당 동물종(種)의 건강, 질병관 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불가피한 <u>사유</u>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• 2. (생략)

제25조(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 기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제27조(윤리위원회의 구성) ① 7 (생 략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 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,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 다. 다만,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

사유(해당
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
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
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
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에 한정
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.·2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
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
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
침을 '위원회(IACUC)표준운영
가이드라인'으로 고시하여야 한
다.
<u> </u>
(현행과 같음)
②
,

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 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	(현행과 제4조제)	_ , .	· 	
-				
-				
-				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의2(실험동물의 공급) 동물 실험시행기관에서 「실험동물 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 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 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

<신 설>

<신 설>

제1항을 적용한다.

제28조의3(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)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시설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정기적으로 관찰·기록하도록하고, 실험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고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누구든지 실험동물의 취급및 관리 등에 있어 이 법과 이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실험시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, 동물실험기관의 장은 신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즉각 조사·처리 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3(동물권리보장원) ① 농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.

- ② 동물권리보장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.
- ③ 동물권리보장원이 정관을 제정·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동물권리보장원의 정관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, 지부,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

 항
- 7.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 항
- 8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의 방법
- 10.
 규약・규정의
 제정・개정

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④ 동물권리보장원의 이사회는 동물보호와 복지, 동물윤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동물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

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
- S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・
 시행 및 평가 지원
- 3. 반려동물 영업장, 동물실험 시설, 축산농장에 대한 정기 적 실태조사 및 평가
- 4.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동물 의 구조·보호에 대한 지원
- 5.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
- 6. 동물 관련 해외 정책조사 및 사례분석
- 7.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
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
 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
 관이 인정하는 업무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

제46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 리위원회의 위원
- 2.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 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영업을 한 자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

권리보장원의 설립 ·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⑦ 동물권리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 유)

③

- 1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을 운송한 자
 - 2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 리위원회의 위원

3.	제3	3조에				
			-하지	아니	하거니	-

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

에 영업을 한 영업자

<신 설>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5. (생략) <신 설>
- 6. (생략)
- ⑤ (생략)

제47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| <삭 제> 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

	<u>받지</u>	아니
<u>하거나</u> 하	지 아ા	니하고
영업을 한		

- 4.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3조에-----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----자
 - 5.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에 영업을 한 영업자

4	 	 	 	 	

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

한 자

- 6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2

1. (현행과 같음)

3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 <삭 제> 조제1항의 <u>동물을 운송한 자</u>

4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5. ~ 15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고통을 최소화할

수 있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

하고 동물을 죽인 자

4의3.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

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

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

지 아니한 자

5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